

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990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소방공무원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함으로써 육아 보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음
- 나. 어린이집 운용에 따르는 제반업무 및 보육철학 제시, 예산계획 및 집행,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, 영유아 보호와 교육, 종사자 임용, 보육교직원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, 부모교육,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 등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추진근거
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3항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 - 추진필요성
 - 보육종사자 채용의 현실적인 어려움 및 운영경험 부재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획일화가 우려되고 다양한 경험과 인적·물적

자원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보육 서비스 욕구에 대처하고 책임경영 및 유연한 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, 안전사고 대비 및 보육교직원 채용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활용

다. 위탁사무 내용(위탁 대상 사무, 범위 등)

- 어린이집 관리,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재산, 시설, 장비 등의 구매 및 관리
-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
- 영유아 보호와 교육
- 예산계획 및 집행
-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
- 부모교육 및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

라. 위탁시설(2개소) 개요

- 소재지 : 은평구(소방행정타운) 및 용산구 소재(용산소방서)
- 규모 : 지상2층, 연면적 520.12㎡
- 개원일 : '20.1월('19. 10월 준공예정)
- 모집정원 : 각30명(4학급)

| 구분 | 0세반 | 1세반 | 2세반 | 3세반 | 4세반 | 소계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|
| 교사 대 아동 (법정비율) | 1:3 | 1:5 | 1:7 | 1:15 | 1:20 | |
| 아동수(정원) | | 8 | 10 | 12 | | 30 |
| 교사 | | 2 | 2 | 1 | | 5 |
| 기타 | 원장(1), 조리사(1), 보조교사(1) | | | | | 3 |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0년~2022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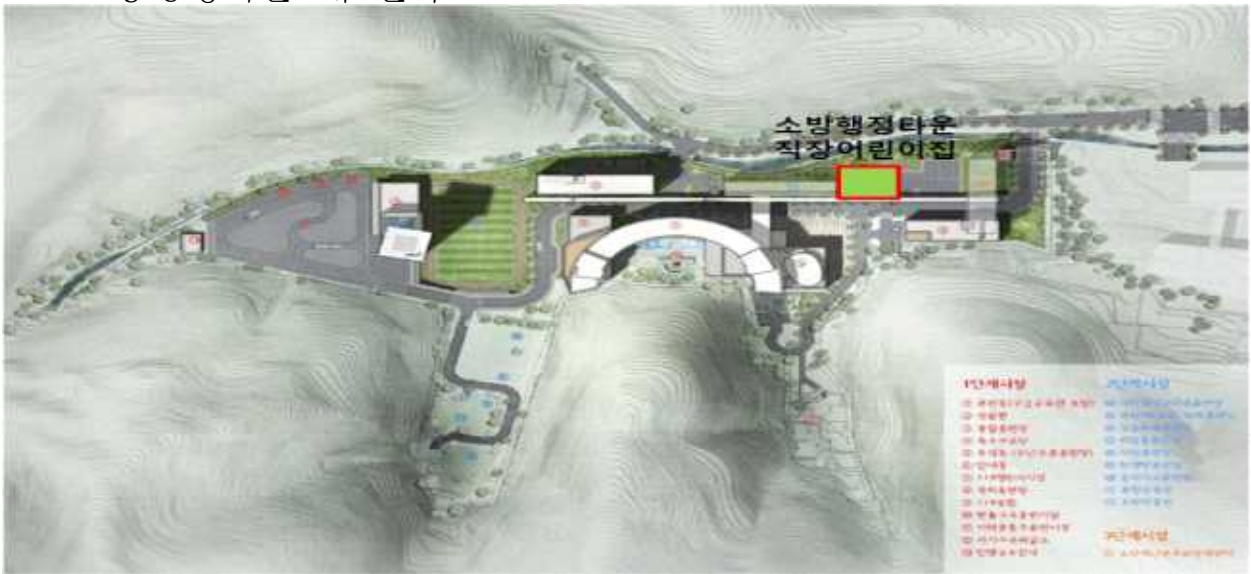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- 운영위탁 대상 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함

시설 위치도

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|--|--|--|
| N S | 1. 소방행정타운 내 신축 2. 용산소방서 내 별도건물 | 범례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height: 6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<td style="width: 50%;"></td><td style="width: 50%;"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</td><td></td></tr> </table>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
1. 소방행정타운 내 신축



2. 용산소방서 내 별도건물



| | |
|------|--|
| 지역여건 | |
|------|--|

현 장 사 진



사진설명

소방행정타운 내 직장어린이집 신축 예정(현재 부지)



사진설명

용산소방서 별도건물 직장어린이집 개보수 예정(현재 건물)

사. 소요예산(2개소) : 908,800천원(개소별 454,400천원)

○ 사업주 부담금(시비) : 670,340천원

○ 보육료 지원금(정부지원금) : 238,460천원

[산출근거]

○ 보육아동 : 30명 (만1세 10명, 만 2세 10명, 만3세 8명, 만4~5세 7명)

○ 종 사 자 : 8명 (원장 1명, 보육교사 5명, 보조교사 1명, 조리사 1명)

| 수 입 | | 지 출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38,460천원 + 670,340천원 = 908,800천원 | | 454,400천원 × 2개소 = 908,800천원 | |
| 시비 계 | 670,340천원 | 계 | 454,400천원 |
| 지원금 계 | 119,230천원 × 2개소 = 238,460천원 | | 소계 307,902천원 |
| 지원금 | 사업수입 (보육료¹⁾) 보육료(종일반 기준) 112,030천원 · 1세 412,000원 × 8명 × 12월 = 39,552,000원 · 2세 340,000원 × 10명 × 12월 = 40,800,000원 · 3세~ 220,000원 × 12명 × 12월 = 31,680,000원 | 인건비 | 급 여 206,351천원 |
| | | | - 시설장(12개월) 38,256,000원 |
| | | | - 보육교직원(12개월) 168,095,000원 |
| | | | · 교사5, 보조교사1, 조리원1 일체포함 |
| | | | 수 당 51,807천원 |
| | | | - 시설장(12개월) 13,407,000원 |
| | | | - 보육교직원(12개월) 38,400,000원 |
| | | | · 교사5, 보조교사1, 조리원1 일체포함 |
| | | | 기타인건비 2,625천원 |
| | | | - 대체교사 등(12개월) 2,625,000원 |
| | | | 기관부담금 47,119천원 |
| | | | - 법정부담금 25,504,000원 |
| | | | - 퇴직적립금 21,615천원 |
| 보조금 ²⁾ | 누리보조(만3~5세) 7,200천원 · 50,000원 × 12명 × 12월 = 7,200,000원 | 운영비 | 관리운영비 64,201천원 |
| | | | - 수용비 53,606,000원 |
| | | | -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,627,000원 |
| | | | - 복리후생비 등 3,328,000원 |
| | | | - 업무추진비 및 직책금 등 4,640,000원 |
| | | 보육활동비 | 보육활동비 76,680천원 |
| | | | - 급간식비 등 50,160,000원 |
| | | | - 교재,교구 구입비 15,600,000원 |
| | | | - 행사비 및 영유아복리비 등 10,920,000원 |
| | | 재산조성비 | 시설장비 유지비 등 5,617천원 |
| | | | - 시설장비 유지비 4,800,000원 |
| | | | - 예비비 등 817,000원 |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: 적정 [조직담당관-6132(2019.5.15.)회]

1) 보육료(정의) : 만0~5세 아동에 대해 정부에서 어린이집의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으로 지원하는 금액

2) 누리보조금(정의) : 만3~5세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금액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『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』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,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·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·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『영유아보육법』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-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※ 작성자 :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 강휘석 (☎3706-1652)